

제·개정 및 폐지 예고문

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. 11.

대한체육회장

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 일부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'23년도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한 평가 기준 및 적용방안, 기타 운영지침을 본 내규에 반영
- 운영 내규 상 일부 용어는 고용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 법률 검토 결과*를 반영하여 위임계약 형태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매년 종목별 하위 20% 교체, 인원 배정 및 활동실적 기준 개편
- 상임심판은 매년 회원종목단체와 '스포츠경기 심판' 관련 특정 사무 처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 수정 필요

3. 의견제출

- 이 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 일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- 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붙임 1. 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(신·구조문 대비표) 1부.